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74
----------	-----

2016. 10. 10.(월)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강현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6년 9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9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0월 10일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강현삼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한 절차를 일부 수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불필요한 절차 내용 삭제(안 제23조제2항)
 - 생태·자연도 작성은 환경부 장관이 작성한 것을 기초로 관할 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 삭제
-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2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경형)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관할 도시 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 작성의 절차를 일부 수정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 현행 조례는 지역주민과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과 조례가 상충되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 작성에 대한 절차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례 제 474 호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4조의 규정을”을 “제4조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을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내”를 “충청북도 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내”를 “충청북도 내”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제13조의 규정”을 “제13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18조의 규정”을 “제18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⑤ (생략)</p> <p>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 ③ (생략)</p> <p>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또는 변경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략)</p>	<p>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제9조 -----</p> <p>-----.</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제3항 -----</p> <p>-----.</p> <p>⑤ ----- 제4항 -----</p> <p>-----.</p> <p>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p>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표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매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조(습지보호지역 지정)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3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을 충청북도보호

② -----
----- 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표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매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제11조(습지보호지역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4조를 -----.

제13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야생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3. (생략)

②·③ (생략)

제14조(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① (생략)

②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을 누구든지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⑦ (생략)

제17조(자연환경조사)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④ 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

1. 충청북도 내-----

2. 충청북도 내-----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연환경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

1. ~ 6. (현행과 같음)

④ -----

과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
구역청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
여야 한다.

제19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
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정밀조
사·보완조사(이하 “자연환경조
사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
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2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②
(생략)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등과
제21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
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 제2항에 따른

-----.

제19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 제18조-----

-----.

제2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권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하여 관할 도시 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그 밖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